

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입사지원서(학교교육사항) 작성 안내

- 일반직 6급 지원자 대상 -

I. 안내 목적

- 안녕하십니까.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. 우리 원에서는 '15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 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
- 특히, '학교교육'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'총점'이 아닌 직무관련성 있는 '교과목' 중심으로 기재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작성분량이 많아졌으며, 이와 더불어 작성 오류 / 착오 기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우리 원에서는 아래의 안내 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오니,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자료를 반드시 읽고 입사지원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II. '학교교육' 사항의 각 기재항목별 안내

1. '학교교육'이란?

- (설 명) 우리 원 입사지원서 상의 '학교교육'은 제도화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을 의미함
- (교육기관 예시) 고등학교(고졸 지원자에 한하며, 대졸 이상 지원자는 제외), 대학교, 대학원, 사법연수원 및 이에 대응하는 해외 교육기관 등
* 대학 졸업자 및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2019. 6. 3.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- (예 외) 위 교육기관 외에도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하여 취득한 이수학점(ex.학점은행제도)도 포함됨

2. 교육분야 - 기재항목 ①

- (설 명) 우리 원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육분야를 총 9가지로 정리(아래 <표-1> 참조)한 것으로, 지원자는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

중 9가지 교육분야에 속하는 교과목만을 기재할 수 있음

< 표 - 1 >

연번	관련 교육분야	과목수 제한
1	공정거래법 분야	5
2	민사법(민법, 상법, 민사절차법) 분야	10
3	기타 법학 방법론, 법학 개론 분야	5
4	경영·홍보 분야	5
5	재무·회계 분야	5
6	경제·정책 분야	5
7	인사·노무 분야	5
8	의사소통능력(문서이해·작성, 의사표현, 논리·사고력) 분야	5
9	대인관계능력(팀웍, 리더십, 심리, 갈등관리, 협상, 고객서비스) 분야	5

- (작성 유의점)(★★★)

① 지원자는 관련 교육분야에 맞게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을 기재하여야 함

※ 해당 교육분야와 관련성 없는 교과목을 악의적으로 기재하는 사례 등이 평가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② 교육분야별 기재 가능한 최대 교과목수 제한(5~10개)이 존재함 → 위

<표-1> 상의 '과목수 제한' 및 아래 설명되는 '교과목명' 참조

3. 학력구분 - 기재항목 ②

- (설 명) '학교교육'을 교육기관별로 구분한 것으로, 지원자는 자신이 기재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교육기관을 [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, 사법연수원, 기타]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됨

- (작성 유의점)

① '고등학교'의 경우 고졸 지원자의 교과목 기재를 위한 것이므로, 대학교 졸업자(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2019. 6. 3.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)자는 사용하지 말 것

[주의] · 대학교 졸업자는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'법과정치'라는 교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'고등학교' - '법과정치'를 기재할 수 없으며,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만을 기재할 수 있음

② '기타'의 경우 학점은행제도, 해외교육기관 등을 위한 것이므로,

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

4. 교과목명(★★★) - 기재항목 ③

- (설 명)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(고졸 지원자의 경우) 상의 교과목을 기재하는 부분으로, 평가단계에서 증빙자료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오차 없이 기재하여야 함

- (작성 유의점)

- ① 기재 가능한 전체 교과목수는 최대 10개 → 따라서 지원자가 이수한 직무관련성 있는 교과목이 10개를 초과하더라도 더 이상 기재할 수 없음
- ② 위와 같은 '전체 교과목수 제한'과 별도로 '각 교육분야별 교과목수 제한'이 존재함(위 <표-1> 참조) → 따라서 특정 교육분야의 제한 교과목수를 모두 채운 경우 해당 교육분야에 속하는 교과목이 더 존재하더라도 추가 기재할 수 없음
- ③ 특정 교육분야에 기재했던 교과목은 다른 교육분야에서 다시 기재할 수 없음(교과목 중복기재 금지)
- ③ 각 교육분야별 '예시 교과목'은 아래 <표-2>를 참조할 것

※ 아래 제시된 교과목은 지원자의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므로, 예시 교과목과 교과목명 일치 여부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며 지원자는 관련 교육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면 됨

< 표 - 2 >

· 「분쟁조정」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공정거래법 분야	· 경제법, 경쟁법, 공정거래법, 가맹사업법, 하도급법, 약관규제법, 대규모유통업법, 대리점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민사법(민법, 상법, 민사절차법) 분야	· 민법총칙, 물권법, 채권법, 계약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· 상법총론, 회사법, 어음수표법, 보험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· 민사소송법, 민사집행법, 보전소송,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) 및 이에 해당하는 과목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	민사재판실무, 민사변호사실무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기타 법학 방법론, 법학 개론 등 법학 기본 소양 분야	법률조사방법론, 법률문장론, 법학개론, 법학입문, 법학통론, 생활과법, 법과사회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(교양 수준의 법학과목 포함)

· 「경영·회계·사무 업무」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경영 · 홍보 분야	- 경영학원론, 경영전략, 기업성장및혁신전략, 기업윤리, 기업경영, 비즈니스전략, 기업윤리, 기업이해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 - 광고효과이론, 정책홍보론, 광고홍보특별연구, 매체기획, 언론학, 홍보학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재무 · 회계 분야	관리회계, 회계원리, 재무관리, 경영정보시스템, 경영정보처리, 원가회계, 고급회계, 세법개론, 중급회계, 회계감사, 경영통계, 기업재무, 예산과 회계, 원가관리회계, 세무회계, 비영리회계, 법인세법, 조세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경제 · 정책 분야	경제학입문, 경제(학)원론, 미시·거시경제이론, 경제통계, 법경제학, 공공경제, 경제이해, 재정학, 정책학, 예산과 재무관리, 정책기획론, 정책분석론, 정책형성론, 정책평가론, 정책집행론, 공공부문의 경제적 분석, 공기업론, 비교정책론, 경제정책, 공공관리 경제학, 공기업의 이해와 관리, 행정학, 정부예산론, 재무행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인사 · 노무 분야	노동법, 개별노사관계법, 근로기준법, 집단노사관계법, 노동쟁의법, 조직론, 조직행위론, 조직구조론, 조직이론, 인사관리, 노사관계론, 노동경제학, 조직설계, 조직행동론, 인사조직, 조직과환경, 조직관리론, 인사행정, 노동행정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
· 「직무공통(직무기초능력 관련)」

관련 교육분야	관련 교과목 예시
의사소통능력(문서이해·작성, 의사표현, 논리·사고력) 분야	글쓰기 관련 과목, 말하기 관련 과목, 토론 관련 과목, 논리·사고력 관련 과목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대인관계능력(팀웍, 리더십, 심리, 갈등관리, 협상, 고객서비스) 분야	갈등관리와 협상, 설득커뮤니케이션, 글로벌리더십, 심리학, 협상학, 및 기타 이에 해당하는 과목

5. 이수학점(이수단위수) - 기재항목 ④

- (설 명) 성적증명서 상의 이수학점을 의미하며, 고졸 지원자의 경우 생활기록부 상의 이수단위수를 기재함
- (작성 예시) 3학점, 2학점 등으로 기재(이수단위의 경우 4단위, 2단위 등)

6. 성 적 - 기재항목 ⑤

- (설 명) ‘총점’은 해당 교과목의 만점 점수(4.3, 4.5, 4.0, 100 등)를 의미하며, ‘성적’은 지원자 자신이 얻은 점수를 의미함
- (작성 유의점)(★★★)

① ‘총점’을 선택함에 있어 “성취도” 및 “등급평가”는 고졸 지원자 또는 해외 유학 지원자를 위한 것이므로, 대졸(예정) 이상 지원자는 사용하지 말 것

② 성적은 **숫자로만 기입 가능함** → 따라서 숫자가 아닌 성적등급 (ex. A, B+ 등과 같은 알파벳 등급 또는 Pass 등급)은 숫자로 변환하여 기입하여야 함(아래 <표-3> 참조)

※ 고졸 지원자 또는 해외유학 지원자로서 ‘총점’을 “성취도” 및 “등급평가”로 선택한 경우에는 숫자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함

< 표 - 3 >

알파벳 등급 변환 예시		
구 분	4.3 만점 기준	4.5 만점 기준
A+	4.3	4.5
A0	4.0	4.0
A-	3.7	-
B+	3.3	3.5
B0	3.0	3.0
B-	2.7	-
C+	2.3	2.5
C0	2.0	2.0
C-	1.7	-
D+	1.3	1.5
D0	1.0	1.0
D-	0.7	-
P	3.3	3.5

* 위 변환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,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점

등급체계(성적증명서 또는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를 참조하여 숫자로 변환하시기 바랍니다.

7. 주요내용 - 기재항목 ⑥

- (설 명) 해당 교과목의 '교육분야'와의 관련성을 기재하는 부분임
- (작성 유의점) 교과목명만으로 해당 교육분야와의 관련성 유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'주요내용' 항목을 통해 관련성 여부를 소명할 것
- ※ 교과목명이 '예시 교과목명' 과 동일·유사한 경우에는 주요내용 생략 가능

III. 입사지원서 평가와 관련된 FAQ

- (질 문) 저는 '법학'이나 '경영학'을 전공하지 않아, 이수한 교과목 중 관련 교육분야에 기재할 수 있는 교과목이 많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도 합격 가능성이 있나요?
- ☞ (답 변) 합격 가능하며, 실제로 우리 원 직원 중 법학/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. 전체 교과목수를 15개로 한정된 점, 학교교육 사항 평가는 서류전형 평가요소 중 일부에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'직무공통 관련 교육분야(의 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)'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재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(질 문) 이수한 교과목 중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성적이 낮아 이를 기재하여야 할지 망설여집니다. 성적이 낮은 교과목도 기재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한가요?
- ☞ (답 변) 낮은 학점을 받은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(질 문) 입사지원서 상의 '교육분야'와 관련하여 9개의 분야가 달리 평가되나요?
- ☞ (답 변) 각 교육분야는 동일하게 평가됩니다.